

원산지관리사 - FTA 협정 및 법령 주요 개정사항

p.121 :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 각주 45) 내용추가

한-캄보디아 FTA 추가

p.135 :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한 심사 → 10번째 줄 ③추가

③ 그 밖에 협정관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 등 수입신고 수리 후에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p.146 : 일시수입물품의 관세면제 → 6번째 줄 수정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각 호의 물품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캄보디아와의 협정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p.179 : 21.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추가

21. 한-캄보디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방식(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2호)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자율발급 방식으로 한다.(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6호)

기관발급 방식에 의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시행규칙 제8조 제12항)

- ①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 ②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자율발급 방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다.(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6호)

p.318 : 조사결과 회신 → ⑯ 추가

- ⑯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요청한 경우: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확인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p.323 : 협정별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방법 → 서. 추가

서. 캄보디아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i)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캄보디아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 ii)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3.22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원산지확인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p.329 :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요청에 대한 결과 통지 → ⑮ 추가

- ⑮ 캄보디아: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